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2002년 2월 4일 (월) 오전 11시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순서

사회 : 한홍구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 효림스님 (연대회의 공동대표)
- 경과보고 /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오태양씨 심경고백 / 오태양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자)
- 연대회의 소개 / 이석태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 및 연대 발언 / 정진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김정숙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 발족선언 / 임기란 (연대회의 공동대표)

## 경과보고



- 2000년 9월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 몇몇 사회단체들이 군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토론회 준비
- 2001년 1월 초 한겨레21에서의 기사화 이후 각종 언론과 방송을 통해 여호와증인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됨
- 3월 17,8일 5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진행. 비공개 활동가 워크샵. 며칠 후 징병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3개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에 들어감. 운영자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더 이상 사건이 확대되지는 않음.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응에 들어갔고 이후 보다 대중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공론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를 위해 5월 31일 공개워크샵을 위한 준비모임 구성.
- 5월 초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여호와증인들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하여 법률지원 시작.
- 5월 15일 변호인단이 변론을 맡은 첫 군사재판. 지금까지의 군사재판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3년형이 종전대로 선고되었고 이후 모든 군사재판에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3년형이 구형됨.
- 5월 31일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진행. 100여명 참석.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89년 양심선언자가 참석하여 병역거부 사례에 대한 증언을 하였음.
- 6월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대체복무제도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이단에 대한 특혜입법이라는 내용의 반대성명 발표. 민주당 천장배, 장영달 의원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6월로 공청회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청회가 7월로 연기되고 이후 결국 무산됨.
- 7월 8일 대만대체복무제도 참관을 위한 한국 참관단(이석태 변호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군경전사순직자가족협의회 이애련 회장, 최영금 선생, 인터넷신문 대자보의 이창은 발행인, 평화인권연대의 최정민, 홍창욱 활동가,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태윤 차장, 그리고 앞으로 군대를 가야할 처지에 있는 대학생 임치윤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이 대만 방문.
- 8월 2일 대만대체복무제도 참관에 관한 보고회 개최.
- 9월 27~30일 김수정, 오재창 변호사, 최정민 활동가가 반전인터넷서널(WRI) 연례 세미나 참석. 한국의 상황을 최초로 국제무대에서 발언.
-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최초로 가족 중 같은 죄목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의 병역거부들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6개월 감형, 징역 2년 6월 선고.

- 10월 13일 인권운동사랑방 월례포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말한다’ 개최
- 10월 23일 국방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불가 입장 밝힘.
- 10월 24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한국방문.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상황을 알림.
- 11월 17일 참여사회연구소 제23회 정책포럼 ‘대체복무제, 그 사회적 함의와 제도화에 대한 전망’ 개최
- 11월 26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접수.
- 12월 1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 공익인권법 연구센터에서 ‘소수자의 인권-양심적 병역거부’ 토론회 개최.
- 12월 17일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 병역거부선언.
- 12월 27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확보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 2002년 1월 11일 웨이커 평화단체인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동아시아 담당관 한국 방문.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을 알림.
- 1월 25일 제 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될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상황에 관한 서면진술서를 제네바 사무국에 제출.(민변)
- 1월 29일 서울 남부지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경수(21, 대학생)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사건심리를 정지하고 현재에 당 사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심판제청을 결정
- 2월 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발족식 및 기자회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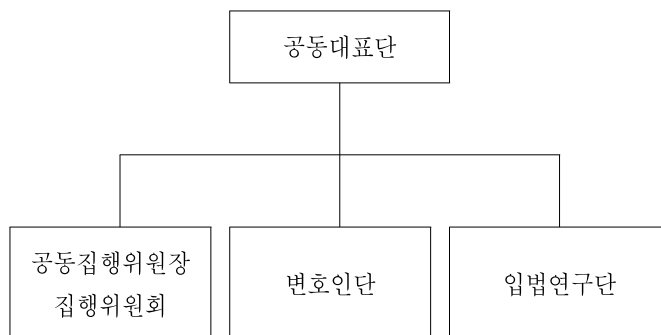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서로 다른 ‘양심’이 있고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양심의 자유라 하여 헌법 제 19조에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학습되어 믿어온 몇 가지 의식에 의해 천부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가 종종 침해당하는 상황을 목격해 왔다. 한국사회가 극복해야 할 수많은 인권문제에서 이것은 때론 우리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때론 수십 년을 수인의 몸으로 자유를 저당 잡혀야 하는 무서운 형벌로 사문화(死文化)되어 왔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의한 또 한 무리의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다. 양심의 이유로 총을 잡거나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바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다. 한국에는 매년 6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행을 택하고 있으며 지금 전국 교도소에 약 1600여명의 거부자들이 있다.

이들의 인권문제는 지금까지 분단에 의한 군사주의와 특정 종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로 있으며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되어져 왔다. 하지만 지난 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낯선 단어와 함께 보여진 이들의 눈물은 한국 사회의 인권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많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지난 해 말 평화주의자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다시 한 번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활발해 각종 토론회 개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왜곡되지 않고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논의로 이끌고자 노력했으며 법조계에서도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많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러한 활동을 성과를 이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중심적 역할을 할 조직체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어 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제 사회적 문제로 받아 안아 논의를 확산시키고 그들의 희생에 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연대회의는 현재 29개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 운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법률 지원 등 실질적 지원사업과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와 분석, 사례 수집, 상담, 사회적 여론화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모임이 될 것이다.

### 1. 조직꼴



- \* 공동대표단 : 김진균 교수(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효립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의장), 송두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임기란 상임의장(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 공동집행위원장 : 이석태 변호사(민변), 최정민 활동가(평화인권연대), 한홍구 교수(성공회대학교, 국제민주연대)
- \* 변호인단 : 김병주 변호사, 김수정 변호사, 박서진 변호사, 오재창 변호사, 윤기원 변호사, 이석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이정희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조광희 변호사, 지기룡 변호사
- \* 입법연구단 : 김수정 변호사(민변), 이재승 교수(국민대학교)
- \* 참여단체 :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 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통일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 가는 사람들, 환경운동연합, 21세기진보학생연합 (2월 4일 현재, 29개 단체)

## 2. 사업계획

### 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활동

각종 토론회와 국제 심포지엄, 간담회, 거리 서명전 등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의미에 대해 공론화 시킨다. 특정 종교의 행위가 아닌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양심’에 대한 이해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공존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자 의무임을 확인한다.

### ② 병역거부자 지원 활동

각종 법률 지원과 상담, 및 자문활동을 통해 병역거부자 혹은 입영을 앞둔 남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도움을 준다. 또한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지원한다.

### ③ 사법적 대응

현재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석방 촉구 운동과 종교의 자유 보장,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게 될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대응을 한다.

④ 유엔 및 국제연대 활동

올 3,4월에 있을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1월 25일 서면진술서 제출, 첨부자료 참조) 유엔 인권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전세계 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한다.

⑤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

해외의 운동사례 및 대체복무제도 현황을 연구, 분석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대체복무제도 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병역제도 전반에 걸친 고찰과 개정을 촉구한다.

⑥ 출판

연구활동을 성과를 모으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수기 발간, 꼬마 자료집 발간 등

## 후원을 받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지원과 연대회의 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조흥은행 355-04-495957

예금주 : 최정민(연대회의)

제58차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잠정의제 11(g)

##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서면 발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단체)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다. 설립이후 민변은 법적 분야에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양심수 특히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구속자들을 위한 변호를 담당해왔다. 또한 민변은 한국사회의 반민주적 법률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990년 한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등 UN인권조약 및 기구들에 가입한 이후, 민변은 한국정부가 이러한 규약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약 하의 책임사항들을 국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변은 인권조약과 관련하여 UN기구에 제출하는 한국정부의 정기보고서가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반박보고서를 준비하여 해당 기구에 제출해 왔다.

2. UN인권위원회는 1998년 77호 결의안(E/CN.4/Res/1998/77)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동 결의안과 같은 맥락에서, UN인권위원회는 2000년 34호 결의안(E/CN.4/Res/2000/34)에서, “각 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현행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해야한다”고 결정하였고, UN인권고등판관실로 하여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규정에 관한 최선의 실천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자료를 발간하도록” 요구하였다.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미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일반논평 22의 48항-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일반논평에서 인권이사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UN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의 이러한 결의안과 일반논평들은, 대체복무제도의 유무에 상관없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그 자체가 기본적 인권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로 존중해야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 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의 체약국일뿐만 아니라 UN인권위원회 2000년 34호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의 사항임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한 현재 한국의 상황은, UN의 결의나 일반논평을 통해 기대되는 바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현재 약 1,6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증인 신

도들이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3,736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체포되어 군형법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의 경우에도, 642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병역법이나 군형법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군대복무를 시작한 여호와증인 신도라 하더라도 곧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군교도소로 가게된다. 과거에는 이들에 대해 군형법상 최고형인 3년형이 예외 없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일부 신도들이 징집명령을 거부했고 이들에게는 군형법대신 병역법 위반이 적용되어 군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군법원의 3년형보다 짧은 1년 6개월형을 선고하였다. 비록 이러한 민간법원의 판결이 어느 정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동정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아무 것도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여타의 대체복무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으며,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병역경력에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도 이들이 적당한 직장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3년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증인 신도들은 교도소 내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일반 수감자들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경우에는 27개월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더욱이, 교도관들도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 규칙을 충실히 준수한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교도소 내 종교활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만약 현행 법률과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극심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혁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사회의 경시적 태도는, 1961년 군사쿠데타로 시작되어 1990년대 초까지 이어져온 군사독재정치와 관련이 있다. 당시 군사정부는, 잦은 외세의 침입과 일제식민지 등의 역사적 상황과 남북분단의 현실 등의 이유를 들어 국방을 위한 군대복무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인식을 심어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군대복무는 신체적 결함이 있어 군대에 갈 수 없거나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국민의 의무가 되어왔다. 당시, 여호와증인 신도들 이외에는 어느 한국인도 감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정부가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 영역에 걸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방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여전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

6. 지난해, 많은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가 이슈화되었다.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증인 신도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각 언론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재판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민변 역시 재판과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법률적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연대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지속될 것이다.

7. 2001년 12월, 26세의 불교신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씨는 양심을 이유로 병무청의 징집명령에 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호와증인 신도가 아닌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다. 그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전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살인을 하는 것, 또는 총과 같은 살상무기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도덕적 양심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오태양씨는 곧 병역법 위반혐의로 체포될 것이며, 여호와증인 신도들처럼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이다. 오태양씨 사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더 이상 여호와증인 신도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오태양씨 경우에 뒤이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결심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현행 병역제도를 유지한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한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8. 이러한 맥락에서, 민변은 UN인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UN인권위원회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UN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의 견지에서 한국의 관련법제를 재검토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UN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민변은, UN인권위원회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가석방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그들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무런 차별 없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민변은, 한국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합법화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국방정책과도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

COMMISSION ON HUMAN RIGHTS

Fifty-eighth session

Item 11(g) of the Provisional Agenda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HUMAN RIGHT**

Written Statement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 Korea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1.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was established in 1988 to contribute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Since then, MINBYUN has worked to improve human rights conditions in legal area, and defended the political prisoners who were particularly arrested in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Security Observation Law etc. MINBYUN has also endeavored to reform the undemocratic laws and systems in Korean society. After Korean government signed th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such a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1990, MINBYUN has tried to watch Korean government to faithfully implement such Covenants and to perform its responsibility hereunder in domestic arena. In addition, MINBYUN has prepared and submitted alternative reports to the UN in regards to Korean government's reports which it has burden to file

under the UN human rights instruments, so as Korean government's reports to be duly considered by the UN.

2.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made a resolution in 1998 session (E/CN.4. Res/1998/77)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on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based upon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the context of this 1998 resolution,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decided in Resolution in 2000/34 that States should reexamine their current status of laws and customs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requested to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to prepare a compilation and analysis of best practices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provision of alternative service. Natur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basic right was already confirmed in 1993 by General Comment (General Comment 22 [48])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At that Comment, the Human Rights Committee declare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from freedom of expression enshrined in Article 18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se resolutions and comment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 mean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in itself a basic human righ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lternative service has been established by States. Therefore States should respec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legitimate right, and should not punish conscientious objectors. States should also prepare an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s mentioned in the foregoing, Korea is a signatory country on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ook part in the above 2000 resolution of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us Korean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to declare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that it respect conscientious objection as human right, and to provide an adequate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3. The present situa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however, in Korea is very far from expectation by the above UN resolutions and comment. Surprisingly, about 1,600 conscientious objectors, all of whom are Jehovah's Witnesses, are now in jail as criminals. For the period of 1991-2000, 3,736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arrested, sentenced to be guilty in violation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and imprisoned for three years. Even in 2000, 642 conscientious objectors were convicted.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faith and conscience, if young Jehovah's Witnesses begin military service, they deny soon exercising military training to use guns, and since there is no exceptional claus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Military Service Law and the Military Criminal Law, their denials to exercise military training eventually lead to jail. In the past, the sentence to them, without any exception, was given for the imprisonment of three years, which is maximum term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But last year, some of them did not correspond to conscription notice and thus instead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the Military Service Law applied to them. The trial was preceded before the civil court, not military court. In those cases, some judges ruled that the convicted persons should be imprisoned for one year and six months, which is shorter than three years term by military court. Even though these civil court decisions reflect sympathy with conscientious objectors to some degree, there is no actual change, because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recognized as legally meaningful right and conscientious objectors do not choose any alternative service. At the present, conscientious objectors are treated as criminals in Korean society, and have serious problems in obtaining jobs. They are not eligible to be employed as a public officer, and also because of importance of military service career in business sector, it is nearly impossible for them to have proper jobs.

4. Jehovah's Witnesses who were sentenced to be imprisoned for three years in jail as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discriminated even in jail. Ordinary prisoners are able to apply a parole where their term in jail elapses one third, but in the case of Jehovah's Witnesses they are unable to enjoy a parole until elapse of twenty-seven months. Furthermore, their religious meeting is strictly prohibited on the ground that they denied to perform military service based upon their religious faith, even though the correction officer admits that conscientious objectors are best prisoners who faithfully observe the correction rule. These extreme discrimination will continue unless the present legal situation does not change. Korean government has responsibility to do a reform.

5. Disregard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Korean society is related to the military dictatorship which began in 1961 coup de tat and continued to early 1990s. The military junta established conception most important duty of Korean people is to perform the military service for defense of country, because historically, Korea was invaded by foreign countries and after liberalization from Japan, Korea was divided into South and North. From this background, in Korea, military service has become unavoidable duty, unless people are not physically unable to do it or are employed in defense industry. Korean people have not dared to be a conscientious objector except Jehovah's Witnesses. However, military dictatorship has been overcome through civilian movement, and Korean society has been developing democracy in whole area. Therefore there is no ground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still to be unrecognizable from the viewpoint of defense of country and national security against North Korea.

6. Since last year, as the fact that many Jehovah's Witnesses are in jail as conscientious objectors is known to public, Korean people have become to concern about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Civilian activists organized groups to support

and help Jehovah's Witnesses in jail, and started to campaig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to be respected as human right. The press also reported in detail the process of trials on conscientious objectors at courts. MINBYUN also took part in counseling conscientious objectors during trial. It is expected that solidarity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ll be made in large scale for dealing with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7. In December 2001, Mr Taeyang Oh, a 26-year-old Buddhist and pacifist, determined that he would not report for duty of military service to conscription office according to his conscience. He is first conscientious objector outside the Jehovah's Witness. He says that Buddhism teaches that all living beings fear death. Harming or killing another person in war, or learning to use guns would violate his religious and moral beliefs. It is presumed that Mr Oh will soon be arrested in violation of the Military Service Law, and indicted by prosecutor like Jehovah's Witnesses. The case of Mr Oh clearly shows that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not any more limited to matter of only Jehovah's Witnesses. Sooner or later more people will determine that they are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s following an example of Mr Oh. Certainly, there will be more victims of conscientious objectors, if Korean government maintains present military service system.

8. In this connection, MINBYUN sincerely suggest that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be well informed of exact situa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and that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quire to Korean government to report whether Korean government has reexamined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so as to follow the UN resolutions and comment which have repeatedly recognized it as fundamental human right, and what Korean

government will do in order to concretize such UN resolution and comment in near future. Apart from this, MINBYUN strongly hope that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will recommend Korean government immediately stop from punishing the conscientious objectors as criminals and prepare a special measure to release conscientious objectors. Even before release, to the prisoners of conscientious objectors, reasonable parole should be admit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y should be able to have a religious meeting during imprisonment without any discrimination. Also MINBYUN expect that as one of measures for solving the issue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Korean government should newly legaliz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s human right and introduce alternative system so that the conscientious objectors may not be punished as criminals. This change of policy will greatly and drastically contribute to democracy in Korean society, and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of national defense in real meaning.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지난해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집총을 할 수 없다는 여호와증인들의 사언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한국 사회에는 또 하나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널리 알려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종교적 편견과 전통적 국가안보관에 의해 국군 창설 이래 1만 여명을 헤아리는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는커녕 그 존재조차 감추어져 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란 자기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행하는 자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 교도소로 격리되어야만 했다.

현재 1600여명에 이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과의 딱지를 단 채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보편적 가석방 기준에서도 제외되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긴 27개월 이상의 형을 살아야 비로소 가석방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부자가 대를 이어 복역을 하기도 하고 형제가 연이어 같은 이유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최근 이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에게 6개월의 형량을 감해주는 전향적인 판결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거부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이지, 양심이 소극적으로건 적극적으로건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근본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 분야 복무나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간 각종 결의안 등을 통해 각 국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도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2000년 대만에서는 포괄적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현실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남성중심적인 병영국가이자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실리주의와 더불어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는 헌법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체 병역의무자의 30%에 이르는 많은 수의 대체복무자들이 존재한다. 또한 그 복무 분야도 사회복지 분야 전반으로 매우 확대되어 있으며 이들의 존재가 복지국가 독일을 건설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비단 대만, 독일뿐만 아니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매년 600명 이상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1600여 명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징병제가 도입된 이래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 문제가 비단 특정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양심과 실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는 인권의 차원에서 출발한 사회적인 논의였기보다는 특정 종교의 고유한 행동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한 인식과 논의의 부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사회적 접근과 실천적 논의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현 병역법에 보장된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현존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오히려 대만보다 더욱 빠른 진척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남북대치 상황으로 인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이미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군사주의에 기반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가두어둘 생각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 인권국가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1. 국회와 정부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신청 기준상 차별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1.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에 반대한다. 오태양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실시하라!

<정당사회단체인>

가재웅 강국주 강민서 강민철 강성운 강수진 강신권 강양구 강연배 강영규 강진석 강택관 강한규 강해현 강혜민  
 강화정 고근예 고나무 고승우 고진오 공태운 구분승 권도경 권설란 권성희 권영길 권오현 권용보 권혜란 금융무  
 길인재 김 우 김 응 김 준 김 찬 김 휘 김경애 김경진 김경환 김광수 김광원 김귀연 김근모 김기식 김기연  
 김기일 김낙준 김남근 김도현 김동욱 김동중 김동철 김동훈 김두수 김두현 김득의 김면수 김명숙 김명진 김명철  
 김미영 김미정 김미진 김민곤 김민영 김민임 김박태식 김범석 김병석 김병학 김보성 김보영 김삼석 김상미 김상훈  
 김석규 김석운 김석준 김성민 김성수 김성지 김성진 김성한 김성희 김순심 김아롱 김애란 김애리 김애리 김엘리  
 김영경 김영균 김영민 김영숙 김영심 김영원 김영주 김영진 김영철 김영훈 김옥미 김옥순 김용균 김용운 김용주  
 김용한 김유진 김윤수 김윤식 김윤환 김윤희 김은기 김은선 김은애 김은영 김은주 김일영 김재운 김재운 김재현  
 김정미 김정수 김정숙 김정아 김정에 김정하 김정호 김제남 김종욱 김종진 김종철 김종현 김준수 김준환 김준현  
 김지연 김진영 김진원 김진택 김창엽 김창현 김창희 김천일 김충례 김타균 김태일 김태호 김학규 김현아 김현우  
 김현주 김현지 김형근 김혜경 김혜원 김혜인 김호기 김희명 김희재 나도현 남규선 남기문 남창수 노희찬 류은숙  
 류준수 류흥기 류희원 모승훈 문득현 문만식 문명학 문성준 문은미 민병기 민상준 박근용 박두희 박래균 박명삼  
 박명룡 박명수 박명철 박상중 박성민 박성아 박성진 박성하 박성희 박세현 박수선 박수정 박수경 박순보 박순철

박순희 박양수 박여라 박영선 박영숙 박영옥 박오숙 박용길 박용순 박원석 박원순 박은미 박은정 박인덕 박인용  
 박정은 박정훈 박종갑 박주동 박주미 박지연 박지영 박진영 박창규 박철민 박치웅 박태영 박홍순 방상규 방용희  
 방지은 방지훈 배경내 배덕호 배병국 배상조 배신정 배철준 백은옥 백종운 백종화 백호진 범 용 변정섭 봉 어  
 서경순 서웅석 서준식 손빈환 손상열 손혁재 손호섭 송동현 송성훈 송소연 송초아 송태경 신 철 신강휴 신광수  
 신귀남 신문옥 신미정 신석환 신승원 신응균 신장식 신재영 신중식 신진욱 신현관 신혜영 심병찬 심상정 심은희  
 심태섭 심희진 안경환 안길수 안대균 안병주 안성우 안순인 안용준 안용준 안정금 안진걸 양연수 양영미 양영희  
 엄영선 엄태근 여준민 연희철 염규홍 오미숙 오병일 오병철 오성민 오재영 오재진 오재형 오진우 오현아 우미영  
 우병국 우상국 우중국 원건형 원희영 위진호 유 경 유나경 유민호 유병규 유세영 유시민 유은진 유준석 유해정  
 유효근 윤각열 윤명선 윤복남 윤여정 윤영록 윤은미 윤재설 윤종민 윤필영 이 영 이강백 이강준 이경환 이공석  
 이광석 이광호 이귀보 이규재 이금희 이기노 이나라 이나래 이덕우 이동열 이동직 이명규 이문옥 이미선 이상현  
 이상환 이상훈 이새별 이선근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필 이성화 이성훈 이송희 이수진 이수현 이순녀 이순용  
 이승민 이승희 이영일 이영진 이영환 이용교 이용희 이윤경 이은하 이인재 이재명 이재영 이재학 이정님 이정모  
 이정우 이정원 이종일 이주실 이주영 이주우 이주희 이준규 이준길 이지안 이지은 이지은 이지현 이찬진 이창섭  
 이창수 이창우 이창조 이춘열 이태호 이해삼 이현준 이현철 이형로 이해연 이호곤 이호성 이훈걸 이희동 임기란  
 임대섭 임도현 임동현 임미란 임미령 임미옥 임선백 임성재 임성택 임소희 임연신 임영기 임은옥 임종근 임진희  
 임태훈 장남훈 장미라 장상환 장석주 장석준 장여경 장유식 장윤선 장정환 장종택 장진영 전김명훈 전문기 전유순  
 전은주 전진교 전해영 정 율 정경란 정경진 정규철 정김지원 정대훈 정명희 정문수 정세권 정순녀 정순철 정승철  
 정연옥 정영선 정용욱 정운영 정원교 정윤광 정은경 정은주 정인숙 정인식 정종권 정종남 정종수 정지인 정태규  
 정태길 정태희 정현정 정현희 정혜원 정호진 정희운 조동진 조문순 조미영 조약골 조연행 조영진 조영민 조영실  
 조영효 조진호 조해정 조형수 조형숙 조형진 조홍련 조홍식 주삼환 주수영 주희준 진미경 진상우 진영종 차병직  
 차수련 차신혜 차영민 차한선 채기승 채은아 채정훈 채진원 천연옥 천영세 최 선 최관현 최규업 최기영 최경모  
 최미경 최미영 최성란 최성지 최성진 최소영 최순영 최영민 최용국 최은아 최이연 최인숙 최인혁 최정민 최정희  
 최종두 최종숙 최종순 최준규 최준배 최준석 최창준 최한수 최현모 최현숙 최현주 최현진 최형록 최희선 추혜선  
 표미정 하강석 하길영 하명수 하성주 하승수 하장호 환경석 한범희 한상진 한성규 한성욱 한성훈 한이정희 한재각  
 한채윤 한희숙 함상숙 홍경남 홍석인 홍성준 홍승하 홍예원 홍우철 홍원표 홍인분 홍준호 홍창욱 홍현정 황광우  
 황주석 황진환 황학성

<법조인>

강문대 강신하 강율리 고영구 권정호 권혁근 김동균 김두식 김병주 김상준 김석연 김선수 김수정 김승교 김외숙  
 김인희 김재영 김제완 김주원 김 진 김진국 김철준 김태선 김호철 남상철 남현우 도재형 문광평 문병호 박갑주  
 박기준 박성호 박영립 박영운 박찬운 박태현 박형상 성상희 손난주 송기원 송두환 송선양 심재환 안병용 안영도  
 양영태 오재창 윤기원 윤상구 이덕우 이민호 이병래 이상희 이석태 이승태 이정희 이현주 임종인 임창기 임채균  
 장경욱 장완익 정대화 정연순 정재성 정훈탁 조광희 조용환 지기룡 차규근 최강호 최명준 최석진 최영동 최원식  
 표재진 하영석

<학계>

강창일 고병현 공제욱 김동춘 김명환 김상봉 김영범 김윤자 김진균 김진만 김창진 김호기 박노자 박순성 손규태

신영복 신정완 심상완 오만규 유동주 이병천 이재승 장복희 전창환 정대화 정재현 정해구 조현연 조효제 조희연  
진중권 최광수 한홍구 홍성태 황상익

<문화·예술인>

강내희 강성률 강진희 강찬석 강홍구 고길섭 고안원석 고정환 김 철 김규철 김노경 김동원 김명인 김백기 김보성  
김성환 김수기 김아란 김은영 김은주 김인규 김재운 김정현 김종휘 김채현 김태현 김태희 김환태 나창진 남태우  
남태제 노혜경 도정일 류문수 류승준 명계남 민병훈 박경태 박고은 박세연 박유리 박인배 박재동 박찬국 백지숙  
서석원 서정민갑 서제인 선용진 송성영 송수연 송은정 송재진 송희영 신동호 신현수 신현준 심경희 심광현 안성배  
안영진 안태호 여선주 오수원 원수연 원승환 원용진 유창서 윤재우 윤지은 이 섭 이동수 이동연 이상현 이성욱  
이왕재 이요훈 이용훈 이원재 이유주혜 이주훈 이진우 이현정 이해경 임옥상 임정희 임종일 임현석 임홍순 정기용  
정도영 정은숙 정은희 정인선 정지경 조석순애 조선경 조영각 조지은 조형준 주소진 지 혜 진 옥 최김재연 최석태  
최순화 최영목 최영철 최준영 태준식 함주리 홍문정 홍미경 황석영 황세준

<종교인>

강경래 강미지자 강봉희 강성환 강지혜 강진순 강태형 강해운 강현석 강화원 고명환 고성환 고영란 고영삼 고은석  
곽라분이 광 현 구준서 권수진 권영웅 권영자 권종식 권중림 김경나 김경민 김경심 김경애 김경일 김국희 김근주  
김남수 김남정 김남수 김능희 김대선 김도형 김도형 김동진 김동한 김동현 김맹자 김미숙 김미정 김봉준 김블로  
김삼낙 김선미 김선실 김선영 김성운 김설리 김순규 김순암 김신자 김아람 김양숙 김영득 김영수 김영자 김영재  
김영창 김영희 김오성 김용재 김용지 김운수 김운자 김응도 김응래 김인숙 김정년 김정래 김정숙 김정태 김종섭  
김주식 김주황 김진수 김창심 김 철 김태겸 김 향 김 혁 김형렬 김화준 김효숙 김효정 김희경 김희욱 나순녀  
나현정 남 곡 노승수 노영욱 노태렬 노치형 노치호 대 응 덕 본 덕 영 도 관 도 립 도 성 도 현 만 성  
묘 연 문상선 문성순 문옥자 민백기 민병수 민정식 박경서 박경아 박광서 박노숙 박명숙 박문수 박미숙 박선호  
박성준 박송이 박수용 박순금 박순희 박승희 박영미 박영애 박영희 박운영 박재경 박재호 박지원 박진석 박진아  
박찬웅 박천웅 박현숙 박현자 박혜숙 방경진 방 신 백성식 백아이색 백용구 백찬홍 백창렬 범 광 범 린 범 상  
범 선 범 우 범 일 범 정 범 주 범 천 변창배 변현숙 보 경 보 성 보 원 본 원 부 경 서기원 서용진  
서의경 서희동 석 장 선 일 선 혜 성 관 성만재 성미숙 성민선 성삼순 성정민 성주현 성 화 성 화 손극수  
손만진 손유화 손윤숙 손창호 손한우 송성규 성승연 송용원 송정남 신경남 신미나 신재선 신희권 심경훈 안민환  
안정훈 안창도 안희자 양명민 양미강 양영인 양준석 양혜우 여 연 오금례 오성이 오승엽 오영준 오이순 오현주  
왕미애 왕래나 용옥자 우 석 원 묵 원수분 원 우 원 옥 원 종 원 타 유 곡 유성숙 유연호 유현선 유화종  
윤남진 윤순한 윤정자 윤평자 윤홍민 이광일 이귀병 이규준 이금희 이도진 이동균 이두희 이말순 이미란 이병근  
이상효 이선조 이성우 이성환 이서용 이석재 이성구 이세용 이소희 이수용 이순관 이순옥 이신애 이영철 이유정  
이운배 이은숙 이재영 이정석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택 이정희 이종운 이준호 이지평 이진순 이진희 이찬우  
이찬주 이창희 이행철 이현숙 이희향 일 문 임규호 임대현 임매자 임성자 임승철 임영경 임옥금 임효정 자 성  
자 윤 자 현 장도연 장명수 장미섭 장성예 장양래 장용봉 장용오 장원하 장 적 장정숙 장창원 장태호 장 현  
전광석 전봉근 전준호 전화자 정명훈 정 묘 정미연 정 범 정보원 정 산 정상시 정성운 정소희 정영철 정용호  
정우식 정웅기 정원규 정인성 정종민 정주연 정진우 정충일 정태효 정 휴 정희영 조규원 조성천 조순애 조영일  
조영자 조영찬 조우진 조원우 조재현 조정숙 조학연 조혜순 종 광 종 선 종 호 지광미 지광순 지 명 지 산

지 암 지 원 지인석 지재덕 지 태 진 관 진 만 진 명 진 우 진 원 청 현 청 화 최영선 최영재 최원석  
 최원암 최원준 최의팔 최재덕 최재열 최정에 최종덕 최준수 최지영 최 철 최현주 최태숙 최행순 추경옥 토 진  
 퇴 휴 하상덕 하수원 하조이스 한경원 한교영 한명수 한승희 한지훈 한진선 함열규 허정자 현 문 현재식 혜 관  
 혜 성 혜 성 혜 용 혜 조 혜 초 혜 타 호 명 홍광철 홍민화 홍수진 홍순아 홍 승 홍지숙 홍지연 화 범  
 화 암 황경자 황남덕 황인에 황인영 황적만 황태순 황홍원 효 립 효 진 Blum Junghee Byung K. Lee Dawn A. Kim  
 Ilho Jo Ivy Lake Jay Kang Jeffrey Wang Jonathan C. Oh Kee Won Lee Ken H. Choo Linda Park Richard Gu Rhee  
 Sammuel Yoo Song Sonntag Steve H Kim Walter Rhee Yon Ja Lee Yoon H. Seong Young S. Hwang

<시민>

강선모 강연희 고창수 고태수 공배인 공현숙 광의정 권재영 기훈석 김경선 김규환 김기찬 김대성 김대식 김민숙  
 김민정 김상업 김선호 김성일 김성한 김성훈 김영경 김우영 김은옥 김재중 김재혁 김정숙 김정희 김철홍 김혁준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찬 노영민 노영선 류경원 류시대 류지혜 문영진 문현주 박경열 박근영 박동주 박명희  
 박상기 박상준 박성용 박신혜 박은주 박의영 박인성 박정리 박정원 박준호 박철우 박현희 서미경 서정옥 성현주  
 송안화선 송영일 송용석 송은경 송현정 송형렬 신현중 심은하 심은희 안용운 안은수 양동현 양진수 영 준 오 민  
 오윤주 오태양 우성남 우종현 우현주 윤귀성 윤세정 윤찬식 이경희 이동근 이상은 이석형 이선영 이세욱 이수경  
 이승근 이 영 이영식 이영태 이윤정 이재용 이재원 이종현 이혜순 이혜영 이희경 임경희 임성애 임성한 장경주  
 장용창 장태홍 전대진 전승호 정명옥 정무식 정문영 정문이 정수현 정영미 정옥희 정종진 정진우 정혜영 조 협  
 조성만 조영미 조찬구 지윤창 차승엽 최 경 최광수 최성휘 최영숙 최재진 최정연 최창우 최치영 최현숙 하경옥  
 한명구 한희정 허태유 현석환 홍미자 홍성원 홍수연 황순식

<학생>

강동균 강시혁 고건혁 구세진 권경락 김경숙 김돌리 김동규 김동환 김보선 김석민 김선장 김성원 김수정 김윤미  
 김은미 김은영 김재왕 김재형 김정은 김지수 김지현 김진호 김형수 나희선 남상백 남성욱 도레미 문이희진 박건태  
 박김지은 박범우 박병철 박상희 박수정 박용호 박용희 박우철 박윤희 박정은 박종문 박종필 박채훈 박천호 박필웅  
 박현우 박형진 반정호 방병훈 백종현 서대원 서지원 서찬석 서현수 설은주 송승철 송혜미 신상아 신샘이 심우승  
 심우협 안상태 안성우 안현찬 양용범 양준호 엄만용 여연심 여운하 엄경식 오병진 오현우 우경섭 우미영 우승민  
 우지연 위희근 유 경 유 진 유경민 유영록 유홍석 윤강석 윤덕중 윤민성 윤주호 윤지목 이 현 이기선 이기중  
 이령경 이민규 이상현 이성욱 이수영 이수현 이승철 이승훈 이영훈 이용선 이용우 이원진 이재원 이재협 이정섭  
 이창희 이탁건 이택수 이현미 이호철 임경수 임태은 장라진영 장승엽 장중오 장지웅 전은경 전지선 전해웅 정다운  
 정동욱 정문섭 정문수 정석범 정성현 정영훈 정이옥광 정임자 정재훈 정항기 정혜진 정희운 조경형 조이수현 조정상  
 채정우 최김경호 최윤정 최현정 한송이 한승민 한창수 호규찬 홍경남 홍성호 홍일선 황정연 YK Anne

<언론인>

강현정 공희준 김승국 김재중 김홍섭 문 성 박상문 방의천 배두열 변현단 신윤동욱 안인용 이기범 이병재 이숙진  
 이승욱 이승훈 이준수 이준희 이창은 이화영 임규민 정혁기 천경철 최기수 허우영 홍세화

총 1552명

##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 Declaration of 1000 People Urging Alternative Military Services

The testimonies of Jehovah's Witnesses who claimed they could not bear arms on religious grounds were broadcast through various mediums last year raising new human rights problems in the Korean society. It is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ors'. There have been about 10,000 conscientious objecto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s armed forces, but their existence had not been revealed and there hadn't been any debate on the matt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Conscientious objectors refer to people who refuse to serve in the armed forces or bear arms on moral or religious grounds. Conscientious objectors in Korea refused to serve in the armed forces when it is a requirement of all healthy men in Korea. Consequently, they are serving prison sentences.

Currently, there are about 1,600 men serving in prisons around the nation for being conscientious objectors and refusing to serve in the armed forces. This number is increasing every year. These people were not qualified for amnesty or restoration of rights and must live a life with a criminal record. These people were also excluded from general parole status and must serve more than 27 months, a period longer than the required period of military service, before they are given parole status. Sometimes, a father and son serve the sentence consecutively and sometimes brothers serve a sentence together. Recently, there have been cases where sentences

were reduced 6 months for such conscientious objectors, but there still isn't any debate over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t a government level.

The international trend is to recogniz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but such a trend is being put to shame in Korea. Korean laws seem to be conservative with regard to freedom of the conscience in that "the conscience is free when it is internal, but can be restrained when it is expressed externally." Rational policies allowing conscientious objectors to serve the country in other ways are being suppressed. 40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cogniz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hrough conscientious objection laws and various subordinate laws.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is also actively carried out by serving in non-combat zones o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such as nursing homes an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UN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recognize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s proper rights stemming from reason and principles based on the conscience. Recognition of human rights for conscientious objectors and appropriate policies are being recommended through various draft resolutions.

In Taiwan, alternate military services were introduced in 2000 and improved conditions greatly. Circumstances similar to Korea in that Taiwan faces military confrontation with China and it is a male-oriented military nation, the fact that it could introduce alternate military services is a result of utilitarian principles regarding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an interest in the human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Germany,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stated in the law. About 30% of those serving in the armed forces are serving alternate military services.

The areas they served are broad ranging in all social welfare areas and their services contributed in constructing a welfare nation. Alternate military services have a long history and are being implemented not only in Taiwan and Germany, but in 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Denmark and Austria.

In Korea, more than 600 conscientious objectors head for prison instead of bearing arms. There are currently 1,600 in prison right now.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draft system, the number of conscientious objectors continue to increase. The recent refusal to serve in the armed forces by pacifist and Buddhist, Oh Tae-yang, has given rise to the fact that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ors is not only limited to a specific religion, but is a problem of many young men who face enlistment.

Until now,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ors was perceived as unique actions limited to a certain religion rather than being debated as a social problem of human rights. Such a prejudiced perception and the lack of proper debate prevented a social approach to the problem. However, since there are already various alternate military services such as public services and special exemption of military services, policie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will bring about more progress in a shorter time than Taiwan. Concerns that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he introduction of alternate military services "might threaten national defense in a situation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in confrontation" can be overcome through democratic social agreements and rational policies. The many countries that have alternate military services proves that such concerns only amount to unfounded anxiety.

In any case, the freedom of conscience guaranteed by constitutional laws must be respected. The national power and social and cultural violence of isolating and excluding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society cannot be accepted. How much longer will their consciences be locked up behind bars? Protecting the rights of a minority group such as conscientious objectors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a true democratic society that respects human rights. If there are ways to respect individual rights without being contrary to the benefits of the nation, then they should be considered and implemented.

Joint Signature